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도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의 해양환경공단 위탁 근거 신설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38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 성 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도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의 해양환경공단 위탁 근거 신설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20.
3. 회 부 일 : 2026.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역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시·도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업무의 해양환경공단 위탁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차단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국내 해양폐기물은 연간 약 12.6만톤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원 기준 육상기인 폐기물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육상기인 폐기물의 상당수는 집중호우, 태풍 등 육상으로부터 하천을 거쳐 유입되고 있어¹⁾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 해양폐기물 연도별 발생량 >

(단위: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육상기인	87,024	29,247	112,394	39,769	32,742	127,830	59,675	69,812
해양기인	56,696	56,671	56,518	56,293	55,899	55,928	55,408	56,202
합계	143,720	85,918	168,912	96,062	88,641	183,758	115,083	126,014

*자료: 해양수산부

현행법 제11조제1항²⁾은 시·도지사 등에게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심화 시 지방자치단체의 보유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유출방지시설 설치 및 수거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

1) 해양폐기물 중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양이 전체의 6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2월 4일부터 시행 -」, 2020.12.3.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36503&menuSeq=971&bbsSeq=10>>)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함.

이에 개정안은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활용하여 시·도지사의 차단조치 업무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도가 전문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 조치가 한층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에 따라 위탁되는 업무가 공단의 업무범위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7호³⁾에 따르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해양환경 보전·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전문 인력과 청항선(淸港船)⁴⁾ 등 전용 장비를 보유한 공단에 하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별적인 위수탁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단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⁵⁾

3)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청항선은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으로,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14개 항만 22척의 청항선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청항선을 포함한 공단의 선박 보유 현황은 참고 자료 참조(참고 1 「해양환경공단 선박 보유 현황('25.8.914 기준)」).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지자체의 위탁사업 예산 편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나 개별 협약이 아닌 법률상 근거를 통해 지자체별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실제 집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15조⁶⁾ 및 제33조⁷⁾에 따라 주요 무역항 등의 부유폐기물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 청항선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⁸⁾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이 지자체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수탁할 경우,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단의 장비·인력이 지자체의 위탁 수요에 대응하기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8)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재정자료·분석실> 재정자료>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2026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처리” 참고 (검색일자: 2026.8.19.)

둘째, 공단이 운영 중인 청항선 등은 국가 소유 재산인 만큼,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유재산을 투입·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투입 및 사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전문성을 가진 해양환경공단 활용을 통해 시·도지사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실무 운영 시 혼선을 방지하고 예산 및 장비 투입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⁹⁾

문 의 처
02)6788-5422

9)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해양환경공단 선박 보유 현황(25.8.14. 기준)

지사	선종	선명	총톤수	주기관출력(PS)	진수년월	길이×폭×깊이	항행구역	선령	소유자
부산 (11)	예방선 (5)	108청룡호	138	1,400	2000-07	25.67×8.6×3.6	연해	24.8	공단
		212황룡호	160	2,500	2014-09	27.05×9.0×3.6	연해	10.6	공단
		307대룡호	160	3,200	1996-02	28.96×8.8×3.8	평수	29.2	공단
		502해룡호	306	4,500	2004-10	34.0×11.0×4.5	평수	20.5	공단
		601백룡호	312	6,000	2013-05	36.54×11.5×4.8	연해	11.9	공단
	청향선 (4)	부산936호	54	940	1998-03	22.18×8.7×2.8	연해	27.1	국가
		파란호	70	1,522	2006-07	23.18×9.5×2.3	연해	18.8	국가
		항만정화2호	88	2,434	2017-12	24.93×9.4×2.5	연해	7.3	국가
		항만정화1호	79	2,738	2015-08	24.41×9.4×2.4	연해	9.7	국가
	직업선	청정7호	2.62	250	2002-04	8.6×2.5×1.0	평수	23.0	공단
	조사선	해양환경조사2호	90	2,940	2014-02	29.17×6.6×3.0	연해	11.2	공단
인천 (5)	방제선	환경9호	10	740	2018-04	15.8×4.64×0.94	평수	7.0	공단
	청향선 (3)	청향1호	89	2,638	2017-11	27.04×9.4×2.9	연해	7.4	국가
		청향2호	89	2,638	2017-11	27.04×9.4×2.9	연해	7.4	국가
		에코인천호	281	2,992	2021-07	34.87×10.6×4.3	연해	3.8	국가
	조사선	해양환경조사호	90	2,940	2012-12	29.44×6.6×3.0	연해	12.3	공단
여수 (7)	방제선 (3)	방제1001호	564	-	1997-01	52.66×15.24×3.66	연해	28.3	공단
		208황룡호	212	2,600	1999-10	36.4×9.0×3.9	연해	25.5	공단
		엔담호	5,566	10,880	2022-05	104.0×20.6×8.3	근해	2.9	공단
	청향선 (2)	여청호	76	2,638	2011-12	24.15×9.4×2.9	연해	13.3	국가
		여청2호	281	2,993	2021-06	34.87×10.6×4.3	연해	3.8	국가
	직업선 (2)	청정15호	4.03	400	2019-01	10.25×2.99×0.79	평수	6.2	공단
		청정17호	2.74	200	2022-12	7.77×2.39×0.80	평수	2.3	공단
울산 (8)	예방선 (4)	109청룡호	138	1,300	2000-09	25.67×8.6×3.6	연해	24.6	공단
		111청룡호	182	1,950	2017-12	28.8×9×3.9	연해	7.3	공단
		505해룡호	202	4,078	2005-11	31.91×9.6×4.1	연해	19.4	공단
		에코미르호	560	7,097	2022-08	39.3×12.5×5.0	연해	2.7	공단
	방제선 (2)	환경11호	12	750	2019-12	14.11×4.48×1.03	평수	5.3	공단
		방제1002호	751	-	1999-11	56.41×15.24×4.27	연해	25.4	공단
	청향선 (2)	청화호	71	1,216	2003-07	23.77×9.0×2.9	연해	21.8	국가
		청화2호	273	2,992	2019-04	34.88×10.6×4.3	연해	6.0	국가
대산 (6)	방제선 (4)	방제1003호	654	-	2002-09	49.34×15.0×3.5	연해	22.6	공단
		환경10호	13	700	2019-01	13.70×4.5×1.0	평수	6.2	공단
		환경12호	13	750	2020-05	14.19×4.48×1.04	연해	4.9	공단

지사	선 종	선 명	총본수	주기관출력(FS)	진수년월	길이×폭×깊이	항행구역	선 령	소유자
		환경5호	393	3,600	2006-11	39.49×11.2×4.2	연해	18.4	공단
	청항선	청해랑호	94	2,800	2025-04	22.81×8.5×2.9	연해	0.1	국가
	직업선	청정16호	4.82	300	2021-10	9.52×3.30×0.80	평수	3.5	공단
마산 (7)	예방선 (4)	213황룡호	169	2,500	2014-12	30.3×9.0×3.6	연해	10.3	공단
		308대 룡호	160	3,240	1996-05	28.96×8.8×3.8	평수	28.9	공단
		312대 룡호	192	3,600	1998-12	30.0×9.2×4.0	연해	26.3	공단
		506해 룡호	263	4,500	2010-12	34.45×9.8×4.5	연해	14.3	공단
	청항선 (2)	푸르미2호	104	2,638	2024-01	23.7×9.0×2.9	연해	1.2	국가
		푸르미1호	78	2,738	2014-11	24.15×9.4×2.9	연해	10.4	국가
	직업선	청정18호	2.78	200	2022-12	7.77×2.39×0.80	평수	2.3	공단
동해 (4)	예방선 (2)	316대 룡호	225	3,600	2000-09	31.92×9.6×4.1	연해	24.6	공단
		318대 룡호	195	3,600	2016-03	30.96×9.2×4.25	연해	9.1	공단
	청항선	해파랑호	98	2,448	2017-11	27.47×9.4×3.0	연해	7.4	국가
	직업선	청정20호	2.07	200	2024-01	10.00×2.4×0.8	평수	1.2	공단
군산 (5)	예방선 (3)	215황룡호	182	2,500	2017-11	28.8×9×3.9	연해	7.4	공단
		305대 룡호	158	3,000	1995-03	28.96×8.8×3.8	연해	30.1	공단
		551금 룡호	316	5,240	2014-10	36.54×11.5×4.8	연해	10.5	공단
	청항선	군산청해호	81	2,028	2014-03	25.08×9.4×2.89	연해	11.1	국가
	직업선	청정19호	4.7	400	2024-01	11.99×3.3×0.8	평수	1.2	공단
포항 (4)	예방선	501해 룡호	295	4,500	2002-10	33.10×11.0×4.8	연해	22.5	공단
	청항선	포항해양3호	85	2,738	2017-07	25.11×9.40×2.90	연해	7.8	국가
	직업선	청정10호	1.73	250	2002-04	6.49×2.5×0.58	평수	23.0	공단
	조사선	해양환경조사3호	398	3,600	2015-11	40.59×9.0×4.6	연해	9.4	공단
평택 (4)	예방선 (2)	313대 룡호	190	3,600	1999-01	29.99×9.2×4.0	연해	26.3	공단
		550금 룡호	312	5,200	2013-05	36.64×11.5×4.8	연해	11.9	공단
	청항선	청누리호	78	2,434	2009-04	24.17×9.4×2.9	연해	16.0	국가
	직업선	청정11호	2.31	100	2002-05	8.35×2.5×1.0	평수	22.9	공단
목포 (4)	방제선	환경8호	18	740	2016-12	18.9×5.4×0.83	연해	8.3	공단
	청항선 (2)	청해호	104	2,636	2024-05	23.74×9×2.9	연해	0.9	국가
		청해2호	82	2,638	2018-12	24.15×9.4×2.9	연해	6.3	국가
	직업선	청정8호	2.5	250	2002-04	8.6×2.5×1.0	평수	23.0	공단

지사	선 종	선 명	총톤수	주기관출력(PS)	진수년월	길이×폭×깊이	항행구역	선령	소유자
제주 (5)	예방선 (2)	207황룡 호	139	2,500	1996-08	26.74×8.6×3.6	연해	28.7	공단
		306대 룡 호	190	3,600	1995-11	30.05×9.2×4.0	연해	29.4	공단
	청항선 (2)	온바르 호	99	2,028	2017-11	23.77×9.0×2.9	연해	7.4	국가
		온바당 호	77	2,434	2016-12	24.15×9.4×2.9	연해	8.3	국가
	직업선	청정21호	1.21	120	1999-06	5.86×1.94×0.90	평수	25.8	공단
계	전국 12개 항만						총 70척		

자료: 해양환경공단